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51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 박성준 · 김 현 · 이기헌

황정아 · 진선미 · 김용민

허 영·정성호·강유정

천준호 · 모경종 · 한민수

김성회 · 추미애 · 정진욱

유종군 • 박희승 • 이훈기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 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등비상임위원과 다른 책무가 부여되므로 특별히 인권의식 소양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과 동일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명되고 있어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2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한국은행 총재"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은행 총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②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			
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	1		
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			
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			
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u>한국</u>	<u>국가</u>		
<u>은행 총재</u> , 특별감찰관 또는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은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u>행 총재</u>		
2.・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